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곽규택・김희정・이헌승

주진우 • 백종헌 • 김대식

박성훈 · 조승환 · 서지영

이성권 · 정동만 · 정성국

김도읍 • 박수영 • 조경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를 "해 사법원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제한) ①
대한 소송은 <u>중앙심판원의 소</u>	<u>해사법원에</u>
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u><후단 신설></u>	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u>상고할 수 있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